

역곡지구 하우스토리(부천역곡지구 A-2BL)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내 A-2블록 1,464세대
- 공급대상 : A-2블록 1,464호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976세대 [전용면적 55㎡]

- 역곡지구 하우스토리(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A-2블록) 분양 상담 전화(☎032-860-0976)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 자산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청약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부적격 처리 혹은 불이익 불과)되며,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자격상향지위 등)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은 LH와 남광토건(주)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으로써, 청약신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하여 진행하나, 청약 등과 관련한 일체의 문의는 역곡지구 하우스토리 주택전시관(☎032-860-0976)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자격요건을 갖춘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거주지역, 소득, 총자산,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 청약저축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여 계약체결 시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이하 같음)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금융권의 중도금 집산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집산대출이 현재 미정이며, 중도금 집산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격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도금대출이 추진될 경우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세내용은 기타 유의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전 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6.06.25.)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6.) 이후 중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단지 주요 정보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비규제지역	수도권 거주자	10년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3년	3년	적용	공공택지

공 고	접 수			본청약 (신규신청자)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현장)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 신청포기				
'26.06.26(금)	주택형(타입) 선호순위 선택	주�택형(타입) 배정결과 발표	본청약 신청포기	'26.07.22(수) 10:00 ~23(목) 17:00	'26.08.04(화) (14:00 이후)	'26.08.17(월)~23(일) (10:00~16:00)	'26.11.12(목)~15(일) (10:00~16:00)
	'26.07.13(월) 10:00 ~14(화) 17:00	'26.07.15(수) (14:00 이후)	'26.07.16(목) (10:00~17:00)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하는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A-2블록 1,464세대 중 976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488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 부천역곡 A-2블록 내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의 동·호수는 당첨자 선정 시 청약신청한 주택형(타입)에 따라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포함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LH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한 주택형(타입)별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6.26(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6820005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역곡지구 하우스토리 홈페이지(http://www.역곡지구하우스토리.com)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관람 안내
 - 주택전시관 개관은 2026.07.01(수) 10:00입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사전관람 :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A-2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주택전시관을 '26.07.01(수)~07.05(일) (10:00~17:00) 5일간 사전공개합니다.
 - [중요]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전시관 사전관람 시 역곡지구 하우스토리 홈페이지(http://www.역곡지구하우스토리.com)를 통해 '사전관람 예약제'로 진행 중 이오니, 역곡지구 하우스토리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 주택전시관 내 견본주택은 부천역곡 A-2블록 55A, 55B 타입이 설치되었으므로 관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되지 않은 55C, 55D, 55E, 55F 타입은 반드시 홈페이지 및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전시관 관람이 어려울 경우에도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 참고)

* 주택전시관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8, 역곡지구 하우스토리 주택전시관

* 주택전시관 관람 일정

대 상	구 분	방문 일정	주 소	기 타
사전청약 당첨자	사전청약 당첨자 사전관람 (일반고객 관람 불가)	'26.07.01.(수)~07.05(일) (10:00~17: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8, 역곡지구 하우스토리 주택전시관	* 기간 내 주말, 공휴일 관람 가능 * 관람 및 상담 시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 ☎ 032-860-0976
일반고객 (사전청약 당첨자 포함)	일반관람	'26.07.10.(금)~07.23(목) (10:00~17:00)		

- 청약 전 반드시 주택전시관 및 홈페이지 내 실제 건립세대 촬영 영상 및 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고, 실물 견본 세대를 관람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역곡지구하우스토리.com>)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주택전시관 추후 오픈 예정)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 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KB부동산 웹/앱을 통해서도 청약신청 및 신청내역 결과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접속경로 : KB부동산 웹/앱 접속 → 메뉴 → 공공주택 → LH청약전용판)
- 부천역곡 A-2블록은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 본 주택의 명칭은 "역곡지구 하우스토리"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자격	기본요건	주택·소득·자산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 혼 부 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단,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 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를(태아 포함)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 될 세대를 기준으로 검증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 제34조에 의거 해당주택건설지역(부천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6.)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 |
|--|
| (1) '25.06.26.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2) '25.06.26.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하고 입주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은 주택소유여부, 소득기준, 총자산기준, 중복청약, 해당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분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분양권등을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나,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개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해당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에 의거 거주무기 3년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3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거주무기	거주무기 개시일	3년	「주택법」 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며(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신청 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닐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 고	집 수			본청약 (신규신청자)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타입) 선호순위 선택	주택형(타입) 배정결과 발표	본청약 신청포기				
'26.06.26(금)	'26.07.13(월) 10:00 ~14(화) 17:00	'26.07.15(수) (14:00 이후)	'26.07.16(목) (10:00~17:00)	'26.07.22(수) 10:00 ~23(목) 17:00	'26.08.04(화) (14:00 이후)	'26.08.17(월)~23(일) (10:00~16:00)	'26.11.12(목)~15(일) (10:00~16:00)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접수기간 중 야간(17:00~10:00)에도 청약 가능함						주택전사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8 ☎ 032-860-0976	

- 사전청약 당첨자는 배정된 주택형(타입) 확인 후 선호 주택형(타입)이 아닐 경우 본청약 신청 포기 기간 내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포기(인증서 필요)하여야 하며, 포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본청약 신청접수 및 청약통장 사용처리 됩니다.
- 동호수는 당첨자 선정 시 청약신청한 주택형(타입)에 따라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포함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LH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한 주택형(타입)별로 동별·층별·방향별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LH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 현장계약 체결 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부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LH는 인지세 부담액(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자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등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관련) 공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임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는 공사 「취업규칙」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및 신고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선택순 수익계약 또는 명의변경으로 인한 공사 공급 부동산의 취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 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개요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금융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 가입한도 : 최대 4억원(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의 :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 상세자료 : 주택도시금융(nhuf.molit.go.kr) 홈페이지내 [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확인

<수익 공유 정산표 일부 발췌>

대출기간(년)	담보인정비율 70% 실행시			담보인정비율 60% 실행시			담보인정비율 50% 실행시			담보인정비율 40% 실행시			담보인정비율 30% 실행시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1~9	50%	40%	30%	45%	35%	25%	40%	30%	20%	35%	25%	15%	30%	20%	10%
14	40%	30%	20%	35%	25%	15%	30%	20%	10%	25%	15%	10%	20%	15%	10%
19	30%	20%	10%	25%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4이상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 * 담보인정비율은 70%, 60%, 50%, 40%, 30% 중에서 선택하며, 선택한 담보인정비율 적용 시 가입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한도(최대 4억원)를 기준으로 LTV 비율 및 수익 공유비율이 재적용됩니다.
- * 정산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매도가격-분양가격)의 30%를 기금이 회수
- * 정산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부동산 중개료, 감정평가 수수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주택수리비용, 차주가 납부한 기금이자 등을 감안하지 않음. 다만, 만기상환시 감정평가 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나, 대출개시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 금회 공급하는 부천역곡 A-2블록(역곡지구 하우스토리)는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 부천역곡 A-2블록(역곡지구 하우스토리)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금융 용자액(55,000천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되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당첨자 및 그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 **재당첨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제3호)	10년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 '2. 특별공급을 받은 분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기기에 인증서가 복사되어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거주 지역, 재당첨제한 여부,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기준-총자산기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과 납입정금액,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총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I 공급규모,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부천역곡 A-2블록 1,464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3~25층 15개동 전용면적 55㎡ 976세대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타입)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공급 세대수			최고 층수	1층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합계	공공분양					차후공급 장기임대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				
		합 계						1,464	604	372	488	25	35	'29.06월 (예정)
A-2블록	055.9200A	55.9200	24.7030	7.7930	40.3535	128.7695	38.3749	642	258	159	488	25	16	
	055.9500B	55.9500	24.7163	7.7972	40.3751	128.8386	38.3956	120	51	31			5	
	055.9500C	55.9500	24.7163	7.7972	40.3751	128.8386	38.3956	470	198	122			9	
	055.9500D	55.9500	24.7163	7.7972	40.3751	128.8386	38.3956	44	18	12			-	
	055.9500E	55.9500	24.7163	7.7972	40.3751	128.8386	38.3956	138	57	35			3	
	055.9600F	55.9600	24.7207	7.7986	40.3823	128.8616	38.4024	50	22	13			2	

- ※ [중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면적 등 실거주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전시관, 모형, 팸플릿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청약 접수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사전청약 당첨자는 주택형(타입) 선호 신청 기간까지 제출 완료)
- ※ 사전청약 당첨자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은 본청약 물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청약 물량은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금회는 공공분양으로만 공급하며, 장기임대(행복주택)주택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 주택형(타입)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타입)별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타입)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타입)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 지하주차장 슬래브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29년 06월입니다.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1층 세대수는 주거약자용주택(행복주택) 및 가정어린이집으로 우선 배정된 1층 세대수를 제외한 공공분양 최대 배정 가능수입니다.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 사전청약당첨자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단위 : 원)

주택형 (타입)	층별	주택가격	계약금 (5%)	중도금 (20%)	잔금	용자금 (주택도시자금)
			계약시	2027.12.15		입주시
055.9200A	1층	476,800,000	23,840,000	95,360,000	302,600,000	55,000,000
	2층	481,870,000	24,093,500	96,374,000	306,402,500	55,000,000
	3층	492,020,000	24,601,000	98,404,000	314,015,000	55,000,000
	4층	502,160,000	25,108,000	100,432,000	321,620,000	55,000,000
	5층 이상	507,240,000	25,362,000	101,448,000	325,430,000	55,000,000
055.9500B	1층	477,050,000	23,852,500	95,410,000	302,787,500	55,000,000
	2층	482,130,000	24,106,500	96,426,000	306,597,500	55,000,000
	3층	492,280,000	24,614,000	98,456,000	314,210,000	55,000,000
	4층	502,430,000	25,121,500	100,486,000	321,822,500	55,000,000
	5층 이상	507,510,000	25,375,500	101,502,000	325,632,500	55,000,000
055.9500C	1층	477,050,000	23,852,500	95,410,000	302,787,500	55,000,000
	2층	482,130,000	24,106,500	96,426,000	306,597,500	55,000,000
	3층	492,280,000	24,614,000	98,456,000	314,210,000	55,000,000
	4층	502,430,000	25,121,500	100,486,000	321,822,500	55,000,000
	5층 이상	507,510,000	25,375,500	101,502,000	325,632,500	55,000,000
055.9500D	1층	477,050,000	23,852,500	95,410,000	302,787,500	55,000,000
	2층	482,130,000	24,106,500	96,426,000	306,597,500	55,000,000
	3층	492,280,000	24,614,000	98,456,000	314,210,000	55,000,000
	4층	502,430,000	25,121,500	100,486,000	321,822,500	55,000,000
	5층 이상	507,510,000	25,375,500	101,502,000	325,632,500	55,000,000
055.9500E	1층	477,050,000	23,852,500	95,410,000	302,787,500	55,000,000
	2층	482,130,000	24,106,500	96,426,000	306,597,500	55,000,000
	3층	492,280,000	24,614,000	98,456,000	314,210,000	55,000,000
	4층	502,430,000	25,121,500	100,486,000	321,822,500	55,000,000
	5층 이상	507,510,000	25,375,500	101,502,000	325,632,500	55,000,000
055.9600F	1층	477,140,000	23,857,000	95,428,000	302,855,000	55,000,000
	2층	482,220,000	24,111,000	96,444,000	306,665,000	55,000,000
	3층	492,370,000	24,618,500	98,474,000	314,277,500	55,000,000
	4층	502,520,000	25,126,000	100,504,000	321,890,000	55,000,000
	5층 이상	507,600,000	25,380,000	101,520,000	325,700,000	55,000,000

■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신규신청자)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단위 : 원)

주택형 (타입)	층별	주택가격	계약금 (10%)	중도금 (10%)	중도금 (10%)	잔금	용자금 (주택도시자금)
			계약시	2026.12.15.	2027.12.15.		
055.9200A	1층	476,800,000	47,680,000	47,680,000	47,680,000	278,760,000	55,000,000
	2층	481,870,000	48,187,000	48,187,000	48,187,000	282,309,000	55,000,000
	3층	492,020,000	49,202,000	49,202,000	49,202,000	289,414,000	55,000,000
	4층	502,160,000	50,216,000	50,216,000	50,216,000	296,512,000	55,000,000
	5층 이상	507,240,000	50,724,000	50,724,000	50,724,000	300,068,000	55,000,000
055.9500B	1층	477,050,000	47,705,000	47,705,000	47,705,000	278,935,000	55,000,000
	2층	482,130,000	48,213,000	48,213,000	48,213,000	282,491,000	55,000,000
	3층	492,280,000	49,228,000	49,228,000	49,228,000	289,596,000	55,000,000
	4층	502,430,000	50,243,000	50,243,000	50,243,000	296,701,000	55,000,000
	5층 이상	507,510,000	50,751,000	50,751,000	50,751,000	300,257,000	55,000,000
055.9500C	1층	477,050,000	47,705,000	47,705,000	47,705,000	278,935,000	55,000,000
	2층	482,130,000	48,213,000	48,213,000	48,213,000	282,491,000	55,000,000
	3층	492,280,000	49,228,000	49,228,000	49,228,000	289,596,000	55,000,000
	4층	502,430,000	50,243,000	50,243,000	50,243,000	296,701,000	55,000,000
	5층 이상	507,510,000	50,751,000	50,751,000	50,751,000	300,257,000	55,000,000
055.9500D	1층	477,050,000	47,705,000	47,705,000	47,705,000	278,935,000	55,000,000
	2층	482,130,000	48,213,000	48,213,000	48,213,000	282,491,000	55,000,000
	3층	492,280,000	49,228,000	49,228,000	49,228,000	289,596,000	55,000,000
	4층	502,430,000	50,243,000	50,243,000	50,243,000	296,701,000	55,000,000
	5층 이상	507,510,000	50,751,000	50,751,000	50,751,000	300,257,000	55,000,000
055.9500E	1층	477,050,000	47,705,000	47,705,000	47,705,000	278,935,000	55,000,000
	2층	482,130,000	48,213,000	48,213,000	48,213,000	282,491,000	55,000,000
	3층	492,280,000	49,228,000	49,228,000	49,228,000	289,596,000	55,000,000
	4층	502,430,000	50,243,000	50,243,000	50,243,000	296,701,000	55,000,000

주택형 (타입)	층별	주택가격	계약금 (10%)	중도금 (10%)	중도금 (10%)	잔금	용자금 (주택도시자금)
			계약시	2026.12.15.	2027.12.15.		
	5층 이상	507,510,000	50,751,000	50,751,000	50,751,000	300,257,000	55,000,000
055.9600F	1층	477,140,000	47,714,000	47,714,000	47,714,000	278,998,000	55,000,000
	2층	482,220,000	48,222,000	48,222,000	48,222,000	282,554,000	55,000,000
	3층	492,370,000	49,237,000	49,237,000	49,237,000	289,659,000	55,000,000
	4층	502,520,000	50,252,000	50,252,000	50,252,000	296,764,000	55,000,000
	5층 이상	507,600,000	50,760,000	50,760,000	50,760,000	300,320,000	55,000,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타입)의 최상층 층수이며,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중요]** 동·호수는 당첨자 선정 시 청약신청한 주택형(타입)에 따라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포함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LH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한 주택형(타입)별로 동별·층별·항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되며, 분양가는 층별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주택전시관 및 홈페이지 등으로 공급가격, 동·호 배치도, 타입별 평면도 및 면적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인지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타입)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 <용자금 안내>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대환(재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자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용자금 안내> 입주 시 용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자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용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 <모기지 의무가입 지구>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 자금 용자액(55,000천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예정)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공급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 ※ 계약 체결을 위하여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 세대별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 고지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 고지할 예정이며, 계약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입니다.
-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개별 지정 된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공통 유의사항**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타입)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미포함 금액입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 주택전시관은 55A, 55B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 미건립 타입은 반드시 견본주택 및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전시관 관람이 어려울 경우에도 홈페이지 및 팸플릿 참고)
-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타입)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공급대금 납부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 ※ 신혼희망타운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

- **사전청약당첨자 발코니 확장비용 안내**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5%)	중도금(20%)	잔금(75%)
		계약 체결시	2027.12.15.	입주 시
55A	5,356,000	267,800	1,071,200	4,017,000
55B	5,206,000	260,300	1,041,200	3,904,500
55C	5,153,000	257,650	1,030,600	3,864,750
55D	5,141,000	257,050	1,028,200	3,855,750
55E	4,951,000	247,550	990,200	3,713,250
55F	4,923,000	246,150	984,600	3,692,250

■ 사전청약당첨자 외(신규신청자) 발코니 확장비용 안내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계약 체결시	2027.12.15.	입주 시
55A	5,356,000	535,600	1,071,200	3,749,200
55B	5,206,000	520,600	1,041,200	3,644,200
55C	5,153,000	515,300	1,030,600	3,607,100
55D	5,141,000	514,100	1,028,200	3,598,700
55E	4,951,000	495,100	990,200	3,465,700
55F	4,923,000	492,300	984,600	3,446,100

※ 본 단지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동호는 당첨자사전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은 '마이너스옵션'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계약 체결 후 자재조달 및 세대공사 등 공사여건 상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자재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타입)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주택전시관 등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별도의 행위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용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 각 주택형(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동일 주택형(타입)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세탁기 설치 공간 및 수전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각 주택형(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확장금액이 다르게 산정되었으며, 주택전시관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사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실 등은 제외)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 인접 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라 저층부 석재 적용 구간 및 시공 상세 등이 실시공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사시 설치기준은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실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가구(일반, 주방) 배면, 벽, 바닥, 천장에는 시공 선후 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 목장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등급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 골조와 이질 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상의 이유로 주택전시관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창 표면 등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 세대 내 모든 자재는 본 공사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신제품개발,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동질, 동가 사양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공사시 세대 내 조명기구, 분전함, 콘센트, 설비 및 배선기구류, 바닥배수, 가스미터기, 가스차단밸브, 배수 배관 검용 배수구, 수전류, 헬 및 각종 점검구 등의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두께, 위치, 개폐방향, 색상 유리두께, 제품, 제조사 등은 외부 입면계획 및 인허가 결과에 따라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층별 및 라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폭, 면적 등은 인허가 과정 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확장 발코니의 외벽은 단열재 추가 설치시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부 각실 천정 및 화장실 천정의 높이는 설계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부 인테리어 마감에 사용된 석재류, 타일류 등의 표면상 문양 및 크랙은 자재 자체의 물성 및 특성을 미려하게 표현하기 위한 디자인 컨셉임으로 하자가 아닙니다.
- ※ 본 공사시 가구의 후면, 측면, 바닥, 천장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취부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선택	설치대수	구성	판매가격	비고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55A	선택1	실내기 2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	3,990,000	공기청정기능 없음
		선택2	실내기 4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980,000	
	55B	선택1	실내기 2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	3,990,000	
		선택2	실내기 4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980,000	
	55C	선택1	실내기 2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	3,990,000	
		선택2	실내기 4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980,000	
	55D	선택1	실내기 2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	3,990,000	
		선택2	실내기 4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980,000	
	55E	선택1	실내기 2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	3,990,000	
		선택2	실내기 4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980,000	
	55F	선택1	실내기 2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	3,990,000	
		선택2	실내기 4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980,000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격은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실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공기청정기능이 없는 일반형으로 설치됩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공정상의 사유로 계약 이후 추가, 변경, 해지가 불가합니다.
-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 및 모델은 미선정으로 추가선택품 판매시 안내 할 예정입니다. 추가선택품 판매시 제품의 제조사 및 모델은 설치 시점에 이르러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단종(성능개선, 디자인 변경 등의 사유)시 동 제조사의 동급 이상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조사의 제품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동급수준의 타 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고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으며, 입주 전에 안내형식으로 고지합니다.

■ 현관/중문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55A	55B	55C	55D	55E	55F	
공통 현관	현관 중문(3연동 타입)+신발장 하부조명	1,340,000	1,360,000	1,330,000			1,390,000	
	현관 중문(스윙 타입)+신발장 하부조명				1,370,000	1,400,000		

■ 침실2,3 강화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55A	55B	55C	55D	55E	55F	
무상 선택	침실 공간활용형 (침실벽체 이동 및 도어축소)	-	-	-	-	-	-	
	침실 통합형	-	-	-	-	-	-	
침실 2,3	침실 확장강화형	1,620,000	1,620,000	1,620,000	1,620,000	1,620,000	1,620,000	
	침실 공간강화형	2,270,000	2,270,000	2,270,000	2,270,000	2,270,000	2,270,000	

- ※ 현관중문은 장식용 도어로, 차음 및 단열 성능의 기능상 도어가 아닙니다.
- ※ 추가선택품목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위치지정 및 마감재 선택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 중 일부품목은 주택형(타입)별 사양이 다르므로, 해당 주택형(타입)의 형태를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무상 평면 선택제인 침실 공간활용형 선택시, 도어 개구구폭이 축소되어 출입시 협소할 수 있으며, 일부 대형가구류는 도어로 반입이 어려울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선택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방 스타일업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55A	55B	55C	55D	55E	55F	
주방	냉장고장	770,000	750,000	770,000	760,000	750,000	740,000	급배수 불가
	스타일업 주방1 (마감재 업그レード)	1,920,000	1,710,000	1,860,000	1,850,000	1,890,000	1,920,000	
	스타일업 주방2	3,170,000	2,880,000	3,020,000	3,010,000	3,100,000	3,440,000	

(마감재 업그레이드)	광폭 사각 싱크볼+고급 주방수전 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3구 인덕션 쿡탑	경동 / 나비엔매직 ERI-5553	590,000	590,000	590,000	590,000	590,000	59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삼성 / DW80F71Y1SEW	1,120,000	1,120,000	1,120,000	1,120,000	1,120,000	1,120,000	

- ※ 선택하는 주방상판 마감재에 따라, 하부장의 높이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 주방상판/벽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분공사시 패턴, 색상이 다를 수 있으며, 분절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주방가전 선택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타입)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 가전용품 계약 체결 이후 가전용품 제품 특성상 시장 판매가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차액이나 감액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로봡청소기 수납장은,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일반적인 제품을 규격으로 제공되며, 일부 대형기기는 반입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에서 가구 내부규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로봡청소기 수납장에는 전원 콘센트는 제공되며, 급배수 배관연결은 미제공 하오니 계약전,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 중 일부품목은 주택형(타입)별 사양이 다르므로, 해당 주택형(타입)의 형태를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스타일업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55A	55B	55C	55D	55E	55F	
복합 환풍기 (욕실1+욕실2)	힘펠 / FHD2-C150P_NOVA	820,000	820,000	820,000	820,000	820,000	820,000	
욕실 스타일업 (마감재 업그레이드)	포세린 벽타일(600x600) 고급형 위생도기/수전/약세서리/샤워부스 비데일체형 양변기 욕실장 하부 간접조명	3,400,000	3,400,000	3,400,000	3,400,000	3,410,000	3,410,000	

- ※ 욕실 스타일업 유상옵션 선택시, 상부장 하부에는 조명이 설치되며, 스위치 회로의 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욕실 뒷선반은 분공사시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색상 및 패턴이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욕실별 / 아이템별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 추가선택품목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위치지정 및 마감재 선택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조명 스타일업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55A	55B	55C	55D	55E	55F	
조명 스타일업	거실 : 우물천장 4면 우물천장 일체형 직간접 조명 주방 : 슬립형 싱크대 상부등 + 레일형 식탁등 침실 : 직부등+간접조명 (감성등) 거실/침실 : 커튼박스 간접조명 설치	2,410,000	X	2,410,000	2,410,000	2,410,000	X	
	거실 : 우물천장 4면 우물천장 일체형 직간접 조명 주방 : 슬립형 싱크대 상부등 + 거실우물천장 연장 침실 : 직부등+간접조명 (감성등) 거실/침실 : 커튼박스 간접조명 설치	X	2,370,000	X	X	X	2,370,000	

- ※ 추가선택품목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위치지정 및 마감재 선택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유상옵션 선택시 스위치 스타일업 품목 : 거실, 침실(디밍+색온도 조절), 스타일업 스위치 적용

■ 마감재 스타일업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55A	55B	55C	55D	55E	55F		
마감재	바닥 마감재	인테리어 바닥 마감재	2,200,000	2,050,000	2,190,000	2,250,000	2,240,000	2,080,000	
	스타일업 벽 마감재	거실아트월 인테리어 벽 마감재	300,000	390,000	310,000	300,000	300,000	390,000	
		인테리어 벽 마감재 (현관/복도/거실/주방 벽마감재+가구판넬 +복도/거실 일부 픽처레일)	2,050,000	2,410,000	2,020,000	2,390,000	2,180,000	1,980,000	
	복도 팬트리	시스템선반	370,000	X	180,000	530,000	480,000	X	

- ※ 공간별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 본 공사시 바닥재/벽마감재의 무늬와 색상이 주택전시관 상이할 수 있으며,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분공사시 스타일업 아트월 및 벽마감재의 나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스타일업 벽마감재 유상옵션 미선택시, 벽지가 시공되며 하단의 걸레받이가 설치됩니다.
- ※ 타입별 스타일업 벽마감재 영역이 상이합니다.
- ※ 바닥 마감재 유상옵션 선택 시 바닥에 물기 등이 묻어있을 경우, 미끄러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 및 줄눈 등의 오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 주택전시관에 시공된 스타일업 벽마감재의 패턴은 일정하지 않아, 분공사시 주택전시관과 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위치지정 및 마감재 선택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은 품목별 일괄시공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공정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함)

■ 추가선택품목 납부일정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사전청약당첨자	납부일정	계약시	2027.12.15.	입주시(입주지정기간 내)
	납부 비율	5%	20%	75%
사전청약당첨자 외(신규신청자)	납부일정	계약시	2027.12.15.	입주시(입주지정기간 내)
	납부 비율	10%	20%	70%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비용(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 ※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입금 시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비용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각 회차별 납부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주택전시관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하여야 함)
-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추가선택품목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은 지정일에 납부하며, 입주 시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 당첨자 선정 시 동호는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추가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추가선택품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위약금 등에 대한 상세내용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기재하고 체결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 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욕실 배기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이며, 위치이동, 추가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스탠드형 에어컨에는 스탠드형 에어컨, 침실1에는 벽걸이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 매립 배관이 기본으로 설치 될 예정입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쪽의 냉매배관 및 응축수배관이 시공됩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수량에 따라 실외기 개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바람 토출구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온도 대비 5도씨이내로 설정하며 바람 세기를 강풍으로 바람 날개 방향을 좌우, 상하 반복하여 움직여서 가동해 주시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는 주택전시관용 전사용품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는 장비 사양 및 위치와는 무관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제조사 및 사양에 따라 실내기 또는 실외기 규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단종(성능개선, 디자인 변경 등의 사유)시 동 제조사의 동급이상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조사의 제품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동급수준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고 별도의 통지는 징구하지 않으며, 입주 전에 안내형식으로 고지합니다.
-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상품구성, 제품모델, 디자인(색상포함), 설치위치,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품목(가전, 가구, 조명, 스위치 등)의 디자인(색상포함),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은 공정상(발주 및 설치)의 사유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의 공급계약이 불가합니다.
- ※ 인덕션쿠폰 선택 시 렌지후드 상부장 내부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인덕션쿠폰 선택 유무와 상관 없이 상부장은 수납 목적이 아닌 후드 장비 및 자동식 소화기 등이 설치되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중 가전과 불박이가구 설치시 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 불박이가구 품목의 가구 수납형태 및 내부 구성과 규격은 주택형(타입)별, 해당 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가구의 디자인, 내부구성, 하드웨어 상세 등은 본 공사 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엔지니어드스톤 및 세라미타일 (주방상판, 주방벽, 아일랜드 상판) 설치 시 분절 시공될 수 있으며, 이음매가 보일 수 있습니다.
- ※ 욕실 복합 환풍기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욕실 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복합 환풍기 내 욕실팬 기능 있음)
- ※ 욕실 복합 환풍기는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 욕실 복합 환풍기의 리모콘은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 욕실 복합 환풍기는 본 공사 시 동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욕실 복합 환풍기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인덕션쿠폰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하는 가스쿠폰은 설치 및 제공되지 않으며 해당금액은 판매금액에서 차감 정산하였습니다.
- ※ 인덕션쿠폰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는 기존 위치에 설치됩니다.
- ※ 가구류(시스템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거실 및 침실의 디밍 제어시스템은 입주 후 조명기구 및 스위치 교체 시 기능의 제한이 발생합니다.
- ※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한 가구 또는 평면 변경에 따라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천장기구(조명 포함)의 규격, 수량,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입주 후 개별 시공하는 품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공사와 무관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본 아파트의 시공사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에 한계가 있고, 전품목 전시 불가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상세한 설명과 확인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 선택 이후 제품 특성상 시장 판매가가 감액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한 차액이나, 감액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주택전시관 및 홍보물상의 이미지와 실제 입주 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고문에 미기재된 내용은 추후 추가선택품목 계약시 안내 후 계약합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공통
 - ※ 「주택법」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창호, 바닥재, 벽, 천장, 조명기구, 욕실기구, 주

방가구 등)에서 계약자가 직접 일괄 신청시 해당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선택은 불가합니다.)

■ 품목상세

구 분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문틀(상부마감판, 문선, 목재공틀 포함), 문짝, 도어록, 경첩, 도어체크, 디지털도어록(현관), 실외기실 문	육실문틀 하부 실,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일반형 도어록), 방화문틀 및 문짝, 내·외부 PL창호, 주방 티닝도어, 실외기그릴창
② 바닥	강화합판마루, 갈레받이, 현관바닥재(바닥재, 마루귀틀),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시멘트몰탈 포함)	바닥방수(방수 시공부위만 해당),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경량벽체(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는 제외), 벽지(초배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등)	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 석고보드, 단열재, 발코니 벽 도장, 거실 세대단말기(Wall Pad)
④ 천장	벽지(초배포함), 우물천장, 등박스, 반자동림	경량천장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 천장 도장, 환기시설, 스피커
⑤ 욕실	위생기구(양면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욕실전등, 인조대리석, 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천장재(천장틀포함), 샤워부스, 욕실팬, 비상콜, 욕실수납장, 액세서리 일체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배관-배선,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벽타일, 액세서리류 일체, 수전(절수기 포함)	석고보드, 소방관련 시설,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⑧ 일반가구	신발장, 팬트리(시스템 선반 포함), 드레스룸장(시스템선반 포함), 받침가구(문짝포함), 선반을 포함한 수납장, 화장대 등 가구일체	-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 품목 등은 주택전시관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합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원)

타입	55A	55B	55C	55D	55E	55F
공급금액 기본선택품목 금액	27,550,000	27,040,000	27,650,000	27,930,000	27,870,000	28,100,000
발코니 확장비 기본선택품목 금액	796,000	566,000	783,000	1,201,000	451,000	633,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세대별 공급금액(분양가)에서 상기 공급금액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금액으로 합니다.

※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에서 상기 발코니 확장비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발코니 확장비로 합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 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체수급 사정,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 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자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지정 계약 기간에만 선택 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 및 변경이 일체 불가능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내·외부 PL창호는 모두 설치되나,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 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 (입주지정 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 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을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 작업 시 관리사무소 등에 사전 신고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이웃 세대 민원이 우려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아파트 사업 주체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인서를 작성 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사업 주체에서 시공한 소방 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주방용 자동소화 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 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 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보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대금 납부비용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마이너스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비용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 (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 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업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 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 마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 자재(대리석, 타일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옵션 금액이 적용된 분양금액(분양대금에서 마이너스옵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감 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 (건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 시공 되어진 통신기구,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되므로 이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입주 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 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 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증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4. 입주금 납부 안내

- 최대 주택가격의 70%(4억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주택은 주택분양가격이 총자산기준 가액(3.62억원)을 초과하므로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해당 전용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주택가격의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nuf.molit.go.kr)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보증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주택도시보증금 용자금은 제외)을 납부한 후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공고일 현재 기준, 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 단, 주택도시보증금 용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선납할인은 입주시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시정기간 확정일 선납할인 기준일 변경으로 인해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금 용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공고일 현재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사업주체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출)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시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II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신혼희망타운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부천역곡 A2블록 공공주택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부천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급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제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경기도·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지역우선 공급기준
 - <표2> 우선공급 단계별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6.26)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부천시)	30%	· 공고일 현재 부천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5.06.26. 이전부터 계속하여 부천시 거주 (25.06.26.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경기도	20%	·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5.12.26.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25.12.26. 전입한 경우 포함)
	③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선정 단계별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1) '25.06.26.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 (2) '25.06.26.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제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 내 사·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되, 공급세대가 최소물량(3세대 미만)일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지역→경기도→타지역 순으로 배정합니다.
- ※ 부천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 선정 단계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 부천시 1년 이상 계속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 후 최종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 공급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신혼희망타운의 당청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총자산보유 판정 기준

- 적용대상 : 본청약(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청자 (* 사전청약 당점자의 경우 재심사하지 않음)
- 검토대상 :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 신청자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보유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총자산보유기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총자산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6) 현재 "<표3> 총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당청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된 분의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및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안내서에 따라 조사기준일(통상 당청자 서류 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사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전 말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는 당청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청자의 총자산을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총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총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총자산은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 가액의 총합과 부채의 차액으로 검증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청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신청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를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청자로 선정된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3> 총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청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청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표3> 총자산보유기준

구분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상기 3. 총자산보유판정기준 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동산 (건물+토지)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62,000천원 이하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주 택</th>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td>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td> <td>건 물</td> <td>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r> <td></td> <td>시설물</td> <td>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주 택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주 택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②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조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조사기준일 당시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조사기준일 당시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조사기준일 당시 액면가액 • 예수금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 연금저축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③ 기타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④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⑤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시 제외되는 항목 예시 : 한도대출(일명 '마이뉴스통장 대출'), 카드론 등 - 마이뉴스통장 또는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등과 같은 유동성 한도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며, 카드론(장기카드대출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로부터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카드론 대출액을 소명할 경우 부채로 인정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관련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구분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3.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① 부동산(건물+토지)			<표3> 총자산보유기준 참고
② 금융자산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③ 기타자산	⑤를 차감한 금액이	⑤를 차감한 금액이	
④ 자동차	397,000천원 이하	431,000천원 이하	
⑤ 부채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득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4년식 자동차를 2023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 판정기준

■ 적용대상 : 분청약(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청자 (* 사전청약 당점자의 경우 재심사하지 않음)

■ 소득기준 적용

- 사업주체는 당청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청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 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6) 현재 공표유형별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단위 : 원]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일반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우선) 배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5,273,634	6,161,541	6,528,890	6,934,384	7,339,879	7,745,37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추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단위 : 원]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90%	6,780,387	7,921,982	8,394,287	8,915,637	9,436,987	9,958,337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	12,054,021	14,083,523	14,923,176	15,850,021	16,776,866	17,703,71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10%	15,820,902	18,484,624	19,586,669	20,803,152	22,019,636	23,236,12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20%	16,574,279	19,364,844	20,519,367	21,793,779	23,068,190	24,342,602

■ 가구원수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 ※ 임신 중인 태아도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인정하지 아니함.
예비신혼부부	청약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해당하는 자 전원 ※ 임신 중인 태아도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위 '가구원수 적용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를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회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국민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 자료→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 예시 : ①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합니다.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초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형만)작업 종사자(동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소득	공적이전 소득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III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사전청약 당첨자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6)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충족한 사전청약 당첨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6.(금)]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상속의 경우 제외)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사전청약 신청 당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②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9)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6.06.26)까지 주택을 소유한(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사실이 없는 분
 - ③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였거나,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분양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한 분
 - ※ 해당지역 전입일~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 아래 국외 체류여부를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 (1)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 (2)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 불가
 - (3)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에 생애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거주기간은 따로 고려하지 않음
 - ※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9)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당시의 지역우선공급 기준(부천시 1년 이상, 경기도 6개월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유지여부, 재당첨제한 적용여부, 특별공급 기당첨여부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6) 현재의 무주택세대구성원(사전청약 공고 이후 추가된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원 포함)을 기준으로 검증하며, 사전청약 시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에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청약 신청 당시 작성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약 모집공고일 기준(2026.06.26.) 위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07.13.(월) 10:00 ~ 07.14.(화) 17:00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접속 후 신청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공공분양(신혼희망)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및 주택형(타입)별 선호순위 선택 및 접수 → (접수 후) 주택형(타입) 배정 결과 발표 확인 → 분양약 신청 취소 시 포기 신청 필요 (청약 일정 확인)

-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신청서 작성 시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형(타입)의 모든 주택형(타입)에 대하여 선호순위를 선택(중복선택 불가) 해야 합니다. 주택형(타입)은 각 지망 순(1지망→2지망→...)으로 LH 전산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배정됩니다.

사업지구	블록	사전청약시 당첨된 주택형	분청약시 선택 가능한 주택형(타입)	발코니 확장 여부
부천역곡	A-2	55	055.9200A	발코니 확장형
			055.9500B	
			055.9500C	
			055.9500D	
			055.9500E	
			055.9600F	

- 사전청약 당첨자가 배정된 주택형(타입) 확인 후, 분양약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취소신청 기간 내 LH청약플러스에서 포기신청(인증서 필요)을 하여야 하며, 분양약 신청 포기 후에는 취소가 절대 불가합니다. 분양약 신청 포기 시 청약통장은 사용처리되지 않으며, 해당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금회 공급되는 주택 및 타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타입) 배정 결과 확인 일정 : 2026.07.15.(수) 14:00 이후 (LH 청약플러스 → 청약 → 분양주택 →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타입) 배정 결과 조회)
- 분양약 신청 취소 기간 : 2026.07.16.(목) (10:00~17:00) (LH 청약플러스 → 청약 → 분양주택 →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타입) 배정 결과 조회 → 포기신청)
-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위 신청일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주택형(타입) 선호순위 선택 및 접수를 하여야하며, 신청하지 않은 물량은 분양약(신규신청자)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유의사항

■ 중복신청 금지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6.07.13.(월)~07.14.(화))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 주택의 분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 ※ **중복 신청시 모두 부적격 당점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6.07.13.(월)~07.14.(화))에 미신청(포기)한 경우와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당첨된 주택타입 확인 후 분청약 신청을 취소한 경우, 분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자 선정은 분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중요] 동호수는 당첨자 선정 시 청약신청한 주택형(타입)에 따라 분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포함 분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LH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한 주택형(타입)별로 동별·층별·방향별·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

- **입주자저축 효력상실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해당 분청약 당첨시 당첨자발표일(2026.08.04(화)) 이후 사전청약 시 사용한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됩니다.**
- ※ 사전청약시 사용한 입주자저축으로 다른 분양주택(분양제한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시에는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자 구비서류 :**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2026.08.17.~2026.08.23.) 내 구비서류 별도 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6.)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의 분청약 당첨자 선정시 제출서류 : Ⅷ. 추천,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선택사양품목 결정,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참조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신혼희망타운 신청 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금회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2.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2019.06.26.~ 2026.06.26.에 속한 자)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신혼부부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모기치 의무가입 지구]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중요] 동호수는 당첨자 선정 시 청약신청한 주택형(타입)에 따라 분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포함 분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LH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한 주택형(타입)별로 동별·층별·방향별·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
- 분양상향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신혼희망타운 신청 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3.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예비신혼부부

-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입주 전까지 증명해야 하며, 미증명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 목에 따라 계약체결할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예비신혼부부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모기지 의무가입 지구]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중요] 동·호수는 당첨자 선정 시 청약신청한 주택형(타입)에 따라 분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포함 분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LH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한 주택형(타입)별로 동별·층별·방향·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총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신혼희망타운 신청 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4.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한부모가족

- ①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며, 추후라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일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단위 : 원]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모기지 의무가입 지구]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중요] 동·호수는 당첨자 선정 시 청약신청한 주택형(타입)에 따라 분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포함 분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LH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한 주택형(타입)별로 동별·층별·방향·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신혼희망타운 신청 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5. 입주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만 3세 미만을 말함, 태아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타입)별 공급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8> 우선공급 배점표”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8> 우선공급 배점표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가구소득	① 70% 이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초과 110% 이하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② 70% 초과 100% 이하	2	
	③ 100% 초과	1	
(2)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도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미거주	0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 (1) 가구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입주예정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점수 선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7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5,273,634	6,161,541	6,528,890	6,934,384	7,339,879	7,745,37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10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13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와 1단계 우선공급 낙점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타입)별 공급량의 6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9> 일반공급 배점표”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9> 일반공급 배점표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미성년자녀수	① 3명 이상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아(임양) 포함
	② 2명	2	
	③ 1명	1	
	④ 0명	0	
(2) 무주택기간	① 3년 이상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1>의 신청자격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이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 공고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없음(0점) 선택
	② 1년 이상 3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해당없음	0	
(3)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미거주	0	하지 않을 경우 0점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 (1) 미성년자녀수 입력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 수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수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직계비속)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태아)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입주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무주택기간

- <표1>의 신청자격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이 무주택이 된 날부터 산정

산 정 예 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V. 신청서 확인사항"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32세 미혼(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없으며 해당 가점은 0점.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만 30세 미만의 미혼인 한부모가족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2)무주택기간 가점'은 0점으로 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와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동호추첨

- 동호수는 당첨자 선정 시 청약신청한 주택형(타입)에 따라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포함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LH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한 주택형(타입)별로 동별층별방향별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 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IV 신청 시 확인사항(재당첨제한,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거주의무 등)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3. 주택소유확인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매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6.08.04)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LH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LH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3. 거주무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입주자에게 거주무가 부여**됩니다. 거주무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거주무 개시일부터 3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4.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 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타입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인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점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 신청일자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인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인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6.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처리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부적격처리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출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 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원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6.07.13.(월) ~ 07.14(화))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 주택의 본청약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부적격 당점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6.07.13.(월)~07.14(화))에 미신청(포기)한 경우와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당첨된 주택타입 확인 후 본청약 신청을 취소한 경우, 본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자 선정은 본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7.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주택형(타입)별 물량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타입)별 신청자수가 금회 공급(공공분양) 물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취소·해제 등으로 남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차후 재공급하게 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주체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당첨자는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잔여 동·호수 및 동·호 내역을 LH 청약플러스, 모델하우스 또는 분양사무실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전시관 ☎ 032-860-0976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타입)에 한해 LH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타입)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본 블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	2026.07.13.(월) 10:00 ~ 07.14.(화) 17:00	인터넷 신청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026.07.22.(수) 10:00 ~ 07.23.(목) 17:00		

※ 신청기간 중에는 야간(17:00~10:00)에도 청약 가능함

※ 본 단지의 경우 KB부동산 웹/앱을 통해서도 청약신청 및 신청내역 결과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접속경로 : KB부동산 웹/앱 접속 → 메뉴 → 공공주택 → LH청약전용관)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타입)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신청서 작성 시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형(타입)의 모든 주택형(타입)에 대하여 선호순위를 선택(중복선택 불가) 해야 합니다. 주택형(타입)은 각 선호순위 순(1순위→2순위→...)으로 LH 전산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배정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가 배정된 주택형(타입) 확인 후, 본청약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취소신청 기간 내 LH 청약플러스에서 포기신청(인증서 필요)을 하여야 하며, 본청약 신청 포기 후에는 취소가 절대 불가합니다. 본청약 신청 포기 시 청약통장은 사용처리되지 않으며, 해당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금회 공급되는 주택 및 타 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청약 신청자는) 각 주택형(타입)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타입)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기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사전청약 당첨자는 주택형(타입) 선택 기간까지 제출 완료)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결과는 2026.07.23.(목) 오후 9시 이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VI 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PC인터넷·모바일 신청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당첨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공공분양(신혼희망)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및 주택형(타입)별 선호순위 선택 및 접수 → (접수 후) 주택형(타입) 배정 결과 발표 확인 → 본청약 신청 취소 시 포기 신청 필요 (청약 일정 확인)
- 본청약(신규신청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공공분양(신혼희망) 선택 → 주택형(타입) 선택 → 신청유형(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사전청약 당첨자) 2026.07.13.(10:00) ~ 2026.07.14.(17:00), (본청약 신청자) 2026.07.22.(10:00) ~ 2026.07.23.(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당첨된 주택타입 확인 후, 본청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취소신청 기간 [2026.07.16.(목) (10:00~17:00)] 내 LH 청약플러스에서 포기신청(인증서 필요) 하시기 바랍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6.)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부천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부천시)", 과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도", 그 외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엄격하게 처리하며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를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가입기간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회차 조회방법(반드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용'으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신혼부부 특별공급용)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일정 회차 확인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VII 추첨,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선택사양품목 결정,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추첨(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타입) 선정

- 추첨 일시 : 2026년 07월 15일(수) 11:00
- 추첨 내용 ①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타입)

■ 공공분양 동호, 당첨자 선정

- 추첨 일시 : 2026년 08월 04일(화) 11:00
- 추첨 내용 ① 공공분양주택 및 행복주택(주거약자용 주택을 포함)의 동 호수
②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 예비입주자, 당첨자의 동 호수

※ 주택형(타입),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역곡지구 하우스토리 주택전시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8, ☎ 032-860-0976)으로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추첨 참관장소는 추후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현장)	선택품목 결정	계약체결(당첨자)
'26.08.04.(화) 14:00 이후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26.08.17.(월) ~ 08.23.(일) 10:00~16:00 •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체결 장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8, 역곡지구 하우스토리 주택전시관 ※ 서류접수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 될 예정이며, 방문 전 역곡지구 하우스토리 홈페이지(http://www.역곡지구하우스토리.com)를 통하여 사전예약 후 방문바랍니다.	추후 일정 통보 예정	'26.11.12.(목) ~ 11.15.(일) 10:00~16:00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첨결과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청약 → 고객센터 → 나의정보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일부는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사업주체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2026.08.17.~2026.08.23)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6) 이후 발급본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일정 : 2026.08.17~2026.08.23. (10:00 ~ 16:00)
- 주택전시관(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8, 역곡지구 하우스토리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여 제출
- 서류접수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 될 예정이며, 방문 전 역곡지구 하우스토리 홈페이지(<http://www.역곡지구하우스토리.com>)를 통하여 사전예약 후 방문바랍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② 주민등록표등본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④ 주민등록표초본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원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선택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6)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제출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② 주민등록표등본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함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선택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처리될 수 있음
④ 주민등록표초본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필수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⑥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필수	본인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 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⑦ 재직증명서 (복무확인서)	선택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⑧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선택	본인 및 세대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명 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⑨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선택	본인, (예비)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⑩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선택	본인, (예비)배우자	• 태어나 입양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약속(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포함
⑪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선택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⑫ 한부모가족증명서	선택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필수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6.)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⑭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4.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6) 이후 발급본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현장계약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현장수납 불가) * 주택공급금액 계약금, 발코니확장비용 계약금,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른 계약금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③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④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설명서(계약 장소에 비치)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② 당첨자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본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원본)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양식 다운로드 : LH청약플러스-청약-알려드려요-자료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본에 한함)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호대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인지세 납부 관련)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LH는 인지세 분담액(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Ⅷ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도시보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주택전사전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 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지속 사용 제한 등))를 받게 됩니다.
- 입주자지속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지속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지속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취침 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발코니확장, 추가선택품목 계약금 포함)을 위약금으로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변경된 주소지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사업주체로 서면통보(우편, 인터넷, 팩스)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 **현장계약 체결 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2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잔금과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이자를 납부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간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에서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가능하나, 용자금액은 향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금액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이거 계약금 원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이자(연행 7.5%, 변동 가능)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 할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주체,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에 상응하는 조건을 사업주체,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사업주체, 시공사는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종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계약자는 사업주체, 시공사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행 7.5%, 변동 가능)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인지세 제외)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의 입주 및 잔금원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 시 발생하는 제부담금(인지대 및 주택보증수수료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분양상담사는 분양 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

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에서 알선하는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앞당겨지거나 늦춰지는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최초 대출이자 발생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개시일 전일까지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이후부터는 계약자의 실제입주일과 관계없이 계약자가 중도금 이자를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부도 또는 파산 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납부 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2곳 이상의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금리는 동일한 기준금리+가산금리의 금융권을 알선할 예정이나 은행별 금리적용기준 차이로 총 발생이자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 불가 등) 또는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 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을 하더라도 입주 시 대출한 중도금은 본인자금으로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전용대출상품 의무가입 대상자는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에 해당하는 전용대출상품에 가입해야하며, 이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동시예수용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공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제공대상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3급 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 관	마루감을 경사로 설치	고령자(65세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주 방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고령자(65세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낮았이조절 세면기		거 실	세대단말기(월패드) 높이조정, 야간센서등	
			기 타	시각경보기(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 신청시기 : 계약체결기간 (2026.11.12.~2026.11.15. 10:00~16:00)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호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지구 및 단지 여건

관련항목	유의사항
지구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지구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42호로 승인된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도로선형 변경, 승인조건 이행,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의견, 상위계획 변경, 민원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본 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본 지구는 현장여건 및 공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단계가 구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일정이 변경·지연될 수 있고 사업추진 단계는 추후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교통·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생활편익시설인 학교, 공공청사, 근린생활시설 등은 해당 기관 여건에 따라 입주 시기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으며, 시설별 추진계획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함 • 지구 내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 민간분양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음 • 본 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집단에너지공급 사업자의 사정으로 에너지공급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서측으로는 부천종합운동장지구, 동측으로는 부천자연생태공원이 위치하며, 지구 내에 베르네천이 위치하고 있음 • 지구를 가로지르는 역곡로, 지구 북측에는 길주로가 위치하며 차량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인근으로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1호선 역곡역(지상) 등이 위치해 있고, 지구 북측 GTX-B 노선이 계획되어 있음에 따라 이로 인한 소음, 불빛, 악취, 매연, 진동 등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GTX-B 관련 내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남서측으로 서울운수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조업차량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 신설학교 배정 및 인근 학교 배치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 관청(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 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 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는 사업기간이 2028년 6월로 계획되어 있으나, 관계기관 협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성공사 일정도 연기될 수 있음 •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 등 용지매각 일정 및 개별 사업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 도로 신설·확장계획은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사업기간은 관계기관 협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성공사 일정도 연기될 수 있음 • 단지와 연결되는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 중으로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부천역곡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전 청약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p>단지여건</p>	<p>■ 단지 외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외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항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팸플릿 등 홍보물에 표기된 공원, 녹지(완충녹지 포함),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구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세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관계기관 협의 및 공사여건 등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지구 북측으로 부터 약 5.0km 이격하여 김포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 및 건축물 높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변 도로, 상업시설 및 주차장 등 인접용지로 인하여 소음, 분진, 빛공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구 내에 A-1BL, A-3BL, B-1BL, B-2BL 및 B-3BL 등이 인접해 있으며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동측 및 북동측 일부 구간에 인접도로의 소음을 완화하기 위한 방음벽(H=18m, 혼합형) 설치 예정(지구계획 변경 및 지자체 협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며, 이로 인해 일부 동 측은 층의 조망과 시야 등이 간섭을 받을 수 있음 • 본 단지는 당해 지구에서 가장 먼저 착공되는 단지로서 지구내외 도로,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에 입주 전까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어 이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접 도로의 진출입구 및 전력 지중화용 지상기기, 노상 시설물(가로등, CCTV, 소화전 등),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안내표지판,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웹스 등은 관할 지자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보행 및 자전거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가로등, 공원,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단지 인근에 설치될 수 있으며 전력,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레벨차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 남측 및 남서측은 공원 및 공공공지가 계획되어 있음 • 본 단지 동측은 (가칭)역곡1초등학교, (가칭)역곡1유치원의 용지가 확보되어 있으나, 학교용지 유지, 개교 시기 등은 교육청 정책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 남측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용지가 계획되어 있음 • 본 단지 북측은 공원이 위치하여 있고 북동측으로 주유소용지가 계획되어 있음 • 본 단지 동측은 역곡로(약 37m도로)가 있어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개발계획(공원, 완충녹지 계획 포함)은 미확정 상태로, 공원조성계획은 인허가 및 시공여건 및 관계기관의 지구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인근에 위치한 공원은 현재 미확정된 상태로 추후 공원 입구, 공원로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지형여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부 구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옹벽·조경석웹스 등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 옹벽 및 단지내외 보도 및 차도포장 재질 등은 지구단위계획 법령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재질·형태·시공구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시 지구조성공사 및 인근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분양시점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시 대지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이 전 등기시까지 정리할 예정이며, 공급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안전 관리 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부여건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택배차량 통행구간인 데크층과 지하1층 일부구간은 유효높이 2.7m를 확보하였고 그 외 택배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지하주차장의 차로 유효높이는 2.3m를 확보함.
- 본 단지의 주차장 설치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주차대수 (세대당)	구분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일반	장애인	전기차	일반	장애인	전기차	일반	장애인	전기차	일반	장애인	전기차
	계	-	-	-	1,609대	54대	94대	7대	-	-	-	-	-
1,764대 (1.2대)	지상1층	-	-	-	-	-	-	7대	-	-	-	-	-
	지하1층	-	-	-	856대	21대	-	-	-	-	-	-	-
	데크1층	-	-	-	650대	23대	49대	-	-	-	-	-	-
	데크2층	-	-	-	103대	10대	45대	-	-	-	-	-	-

- * 장애인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치는 각 동별로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주차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 본 단지에 설치 예정인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23면, 완속 71면, 이동형콘센트 92면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급속 및 완속충전기 채널형식은 현장 여건에 맞춰 설치 예정.
-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조감도와 단지배치도는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으며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모형의 조경계획 및 시설물(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조경 식재-시설물과 인접한 저층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 차량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한 일부세대(입주 전 현장방문하여 확인) 등은 입주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함
- 단지 내 시설, 토목, 조경, 마감, 부대시설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동별 일부라인 저층부는 동출입구 및 필로티 등으로 계획되어, 일부세대는 소음, 동선, 시선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외기)에 면함에 따른 결로 혹은 난방효율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단지 내 소방 관련 이동식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각 동 일부 전·후면 조경공간에는 교목, 관목, 등의 식재가 불가능하며, 식재 제한 및 시설물 설치 불가에 따른 환경권,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위치 변경 요청 불가함. 아울러, 사업추진과정 및 소방관련 사용승인 조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경면적 등의 단지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 설비인 한전 PAD 스위치와 PAD 변압기가 단지 내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인접 세대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단, 관계 기관 협의 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지구 서측 외부 유입수 처리를 위해 단지 내에 산마루(침투) 측구 및 집수정 등 우수시설물이 설치되며, 단지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함
- 단지의 서측과 북측 원미산에 접하는 부분에는 부지의 안전을 위해 우수측구와 토목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부분은 대지경계선 내에 있어 입주 단지에서 유지관리하는 부분입니다.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데크2층 및 데크 1층은 2.7m, 지하 1층은 2.3m로 계획됨
- 지하주차장은 각 동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이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본 단지는 스마트우편함 적용단지로서 지상1층, 지하1층 동출입구에 우편함과 택배함이 통합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상에 택배차량 운행이 발생할 수 있음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으며 민원에 의한 증설은 불가함
- 주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 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내 주차장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와 인접한 동(201동, 204동, 215동) 저층부 세대는 차량의 진출입 중 소음, 매연, 분진, 눈부심 현상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부근에 출차주의 경광등이 설치되며, 인근 동(201동, 204동, 205동, 207동, 208동, 214동, 215동 등)에 소음 및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은 무기질계 뽕칠로 시공됨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유도등 등이 시공됨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음
- 신속한 주차유도와 주차 가능 공간 및 차량 주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주차유도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임
- 지하주차장 내 경사로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빗물유입, 청소 등으로 인해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본 단지에 설치 예정인 전기차 주차구획 186면(급속23면,완속71면,이동형콘센트92면)이 설치될 예정이며, 급속 충전설비 설치대수는 관련 법규 및 기준에 따라 결정됨
- 각 동별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까지의 동선, 거리, 충전시설의 종류, 개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한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7항 제8항 및 제16조)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헬륨이 계획되어 있으며, 헬륨 상부에 환기탑(D-A)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열풍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세대는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자세한 위치는 단지배치도 참고)
- 아파트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와 제연설비의 제연팬 및 외기 취입구, 발전기 배기탑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점검구가 세대 내외, PIT층, 지하주차장, 공용부에 설치될 수 있음
- 각동에 설치된 승강기와 승강기 제어반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승강로 및 관상기실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음
- 승강기 내부 천장 공기 유입은 환기를 위한 환기팬에 의한 것이며 냉방장치(에어컨)는 설치되지 않음
- 본 단지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행복주택) 혼합단지로서 단지 내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및 대지는 주택유형(분양,임대) 별 구분 없이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일부 시설은 단지 외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하게 될 수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9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공간확보를 위하여 1층 일부세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비입주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가정어린이집은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자도 가정어린이집 인가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임. 이와 관련, 공사는 아파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부천시와 체결할 예정임.
- 단지 내 어린이집 등 일부 주민공동시설은 지자체 및 입주자 의견에 따라 외부에 위탁운영시설(국공립어린이집 등)로 사용될 수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 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됨
- 주민공동시설(실내놀이터, 온가족카페, 작은도서관 등), 어린이집 등에 설치되는 가구는 사업기간 협의에 의한 것으로 향후 추가설치를 요청할 수 없으며, 배관공사가 필요한 주방싱크, 수전, 화장실 도기는 공사시 설치, 제공 예정입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외부(해당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가동 시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은 출입동선이 일부 제한 될 수 있으며, 출입구의 위치, 출입을 위한 복도, 지하 주차장 방면 출입구 등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감도 등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청약자(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비고·벽체출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현관 및 필로티 출입구, 저층부 외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당사 디자인특화계획 및 시공여건, 인허가 등에 따라 디자인, 형태, 크기, 색채, 재질 등이 각기 다르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건물 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 옥상 및 구조물의 형태, 외부 입면, 색채, 마감재, 및 경관조명 계획은 등은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위 지침 변경이나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식재, 야외시설, 건축 및 토목옹벽, 공용시설물, 도로계획 등 공용부분은 현장여건 및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우수 및 결로수 등 배수를 위한 시설 설치 등에 따라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본 단지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공법 적용 시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비용(전기요금 등) 부과 및 운영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함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운영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해당비용(전기요금 등) 부과 및 운영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함
- 경관조명으로 발생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RFID 기반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설을 적용하여 배출량 및 처리비용을 관리함
-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 예정임(1층, 2층, 피로티층과 직상부층의 급수,급탕 계량기의 동파방지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세대 전기요금으로 부과됨)
- 단위세대, 부대복리시설 등에 설치되는 전열교환기 필터 교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지상 조정구간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워홀이 설치되며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됨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지모형 및 분양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 · 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소음 및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내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및 통로 등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일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별도 사생활 보호 시설이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생활자원보관소, 자전거보관소, 휴게시설 및 산책로 등 입주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야외시설물과 인접한 세대는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 될 수 있음
- 동별 일부라인 저층부는 동출입구 및 세대비용(자전거보관소, 지하주차장 환기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계획되어, 일부세대는 소음, 동선, 시선 등에 의한 간섭(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동별 일부라인 저층부에는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피크닉라운지, 실내놀이터, 어린이 도서관 등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되어 이용자 사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 전면, 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위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 단지 내 지하 환기를 위한 시설물(DA)과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수거시설(생활자원보관소) 등이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시설물이 인접하는 일부 동 및 세대는 빛 반사, 매연, 악취, 해충발생, 급배기 소음, 조망 침해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 시설물의 위치, 수량, 크기, 높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시공계획(세부 식재 및 시설물 위치 등) 및 추진 일정 등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단지 내/외부를 구획하기 위한 별도의 펜스, 울타리는 설치되지 않으며, 기타 일부구간에 생울타리 설치 또는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 투시형난간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내 출입구는 주출입구 1개소, 부출입구 1개소가 설치되며, 문주는 주/부 출입구에만 설치되며, 문주 외 출입장식물은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문주는 진입 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 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 시설물의 설치 개수, 위치, 규모 등은 현장 상황 및 상위계획에 따라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되며,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할 수 있으며,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대는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폐기물 수거차량 운행, 냄새, 소음, 분진, 해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위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민원에 의한 위치변경 요청 불가함
- 일부 세대에서 인근 동 옥상의 태양광발전설비, 피뢰침설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 등이 보일 수 있음
- 각 동 옥상에는 태양광발전설비(PV), 축벽면 태양광발전설비(BAPV)가 설치될 수 있으며, 태양광 모듈 사양에 따라 동별 설치 면적은 달라질 수 있고, 시공 여건에 따라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옥상 태양광발전설비 및 벽면 태양광발전설비로 인한 일부세대의 눈부심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 동은 아파트 외벽에 축리용 피뢰침이 설치됨
- 208동 옥상(옥탑층)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수신 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단지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서비스안테나를 지하층, 데크층 및 옥외에 설치할 예정임. (전파환경 개선을 위하여 옥상에 안테나를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부, 1층 및 최상층 계단실, 생활자원보관소, 단지 내 출입구 등에 CCTV가 설치됨
- 단지 내 지하에는 펌프실,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근린생활시설용 소화펌프실/소화수조실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4동 전기실/발전기실, 211동 열교환실/저수조, 207동 근린생활시설용 소화펌프실/소화수조실 위치)
- 계절창고는 각 동 지하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단지여건 상 동별 세대수 비율과 관계없이 설치되므로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의 계절창고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고, 온습도에 민감한 물품은 보관이 어려울 수 있음
- 계절창고 위치는 시공과정 중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발전기실, 전기실, 펌프실, 저수조, 제연팬룸, 팬룸 등 기계설비가 설치된 구역 인접 세대는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냄새, 매연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관련 유의사항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관련 유의사항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마감재 안쪽(천장, 벽체)에는 전기, 통신, 소방 시설물을 위한 배관, 배선, 케이블 및 기타 부속품들이 일부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실의 스위치 및 콘센트의 색상, 규격 및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 강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전 및 전열기 특정회사 제품의 문제로 인지하고 제조사에 A/S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주택전시관,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단지배치도,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지,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주택전시관,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주택전시관,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 속도, 탑승위치, 수량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여, 이에 대한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옵션품목은 제조사, 형태 및 마감재(하드웨어, 색상, 재질 등) 설치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옵션품목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견본주택,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본 공사에서는 전시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거실 시각경보기 등은 전시품임)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유사색상 및 유사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재는 자재의 품질, 품귀, 수급·생산불능 및 제조회사의 부도·파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동등 성능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성능 향상 등을 위해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팜플릿 등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사항이며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 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마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및 옵션품목 선택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고, 강우 및 강풍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단위세대/공용부의 창호 및 난간의 제작사, 사양, 위치, 크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옥외시설물 및 사인물 등은 인허가 과정 및 당사 기준 변경, 본 공사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저층부 외부 마감은 석재마감(필로티 내부, 계단실, 엘리베이터 제외) 및 도장마감 적용 예정이며, 석재적용구간은 주거동의 크기에 따른

- 비례감과 조화를 고려하여 너비는 동마다 상이하게 적용하였으며, 높이는 3개층 적용함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저층부 석재 시공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차별화 및 기능 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붕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파라펫, 실외기 설치 공간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 AL창호, 강화합판마루, 조명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팜플릿 및 주택전시관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설치되는 스마트홈 생활정보기는 일괄 소등(현관 및 현관창고 센서등 제외), 엘리베이터 호출 및 가스 차단 기능을 하며, 화면에는 현재시간 및 외부날씨(온도, 미세먼지 정보)가 표현됨
- 세대 내 동작감지기의 경우 1·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및 침실, 거실의 창호 측면 천장 부위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층의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 천장부 1개소에 설치됨(최상층 발코니 부위는 벽부형)
- 세대 내 주택용 분전반과 세대 단자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점검이 쉬운 벽체에 설치되고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됨
- 급수·급탕계량기함은 PD실에 설치됨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실내 환기설비의 환기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는 제품설명서에 따라 필터점검 또는 교체가 필요함(교체비용은 입주자 부담)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다용도실 천장에 환기용 덕트가 설치됨
- 다용도실에 창문이 없는 세대의 경우 다용도실 천정에 환기팬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지붕은 평지붕으로써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은 설치되지 않음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소방관련법에 따라 제연설비는 엘리베이터 전실에 제연급기 그릴이 설치되며,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 일부 세대 내 차압측정공이 설치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음
- 공간계획에 따라 혹은 시공 과정에서 현관, 발코니, 엘리베이터 등 공간별 바닥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천장고는 2.3m로 시공되나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경량벽체는 칸막이 구조로, 인접한 거실 또는 침실, 욕실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타일 및 석재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 및 색상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장 뒷면과 주방가구 뒷면/하부, 불박이장, 신발장 뒷면, 조명기구 윗면 및 바닥, 천장은 마감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목문을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 대상이 아님
- 석고보드 설치 공법 상 이음부위 테이핑 시공 시 일부구간 평활도가 고르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벽체 및 천장에 음영이 질 수 있으며 이는 하자 대상이 아님
- 욕실 출입문 및 천정재는 ABS 재질로 시공되며 천정에 점검구 시공 예정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공사용 부속품은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 대상이 아님
- 각 실 및 욕실 등에 설치되는 환기구 및 환기장치, SP헤드, 박스류(수전함 등)의 설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어,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등 중량물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욕실 양변기는 절수형이 설치되므로 세정력이 다소 약해 보일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약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배수드레인)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조정될 수 있음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정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타입 및 옵션 선택으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음
- 욕실팬 작동 시 냄새 역류방지를 위한 전동댐퍼가 연동하여 작동되며 댐퍼 및 팬 작동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기계 직배기 배관으로 인하여 세대 내 일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관도출을 위하여 침실1, 침실2, 드레스룸 등의 커튼박스가 일부 축소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천장 내부는 직상층 세대 화장실의 배관이 통과하므로 소음이 있을 수 있으며,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됨
- 욕실 천장 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 구매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쿡탑 추가선택품목 선택여부에 관계없이 전 세대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됨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의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는 공간은 수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 또는 하부장에 PD점검구용 캡이 설치될 수 있음
- 주방 하부장 일부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식 소화기는 하이브리드형(전기+가스)으로 설치되어 가스쿡탑, 인덕션 선택과 무관하게 호환 사용 가능합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 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으로부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타입별로 후면 또는 측면에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내부에 별도로 시공되며,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에서 배출되는 열기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실외기실에 세대환기용 유닛 및 덕트가 설치되며, 별도의 마감재 없이 노출 시공됨
- 실외기실 도어가 실내(다용도실,드레스룸 등)로 열림에 따라, 실내가구와 간섭이 생길 수 있음
- 실외기실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 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함
- 실외기실에 우천시 빗물 유입 등으로 인한 관리(청소 등)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해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강제급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공기흡입,배출구)는 거실과 침실 등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에어컨 가동 전에는 그릴을 개방하고 실외기 주위에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하며, 그릴 미개방 시 실외기실 온도상승으로 인한 화재 발생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 개방으로 인한 수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은 비난방 공간이므로 겨울철에 에어컨 실외기 그릴 개방 등에 의한 외기 유입으로 수전류 등에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주의를 요함 • 비상대피를 위하여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고, 별도의 대피공간은 구획되어 있지 않으며, 필로티 타입의 최하층(일부 세대 하부 부대시설이 계획된 경우 완강기 설치예정)도 사다리 설치됨 •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상부 세대 하향식 피난구 사다리 전개를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물건 적치가 불가함 • 세대 내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므로 화재 등 비상시에만 개방하여야 하며, 임의의 피난구 개방에 따른 경보음 발생 및 인접세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임을 인지하여야 함. 또한, 천장에는 상부 세대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 상부에 전열교환기가 하향식 피난구 위치에 따라 층별 교차 설치됨 • 실외기실의 하향식피난구는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자재로 설치될 예정임 • 발코니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및 환기유닛 전용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됨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거실 및 침실1에 매립되는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을 기준으로 설치되며, 침실 1의 에어컨실내기 매립박스에는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매립형박스가 노출될 수 있음 (침실1은 냉매박스 설치 및 도배 후 스티커로 위치 표시) • 세대 내 시스템에어컨(선택품목)은 거실 월페드와 연동되지 않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다량의 온수 사용, 빨래건조, 가습기 사용, 겨울철 환기 소음, 음식물 조리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팜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다용도실 및 에어컨 실외기실 포함)는 대용량의 세탁기 및 건조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세탁기문과 벽 및 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탁기 및 건조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사이즈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임 • 초과발코니 면적은 발코니의 폭이 1.5m를 초과하여 돌출된 부분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면적임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옵션 선택 이후, 입주인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 및 추가 설치 요청 등은 불가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p>일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 여건, 협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사업지구를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주택전사관 및 모형은 공급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폐쇄 및 폐기할 예정임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은 2025년 12월 사업계획승인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됨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증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음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 성능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 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함 • 단지 내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및 대지는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특정 입주자 또는 단체가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시설은 입주 전,후 한시적으로 입주지원시설(A/S센터 등)로 사용될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며, 공동주택단지외 별도의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릿에 포함되지 않는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 수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세대 내 시설물을 철거 혹은 훼손할 경우 퇴거 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터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안내책자(팜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도 상의 치수는 팜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p>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주택형(타입)이라도 동호 라인에 따라 팸플릿과 달리 평면이 대칭되어 시공될 수 있음
<p>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p>	<p>■ 초·중·고등학교 학생 배치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개발지구 내 (가칭)역곡1초등학교, (가칭)역곡1유치원의 학교용지가 확보되어 있으나, 학교용지 유지, 개교 시기 등은 교육청 정책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일부가 부천역곡초등학교이며, 해당 학생배정 정책 및 여건에 따라 통학구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 학교군은 '오정역곡중학군'이며, 해당 중학군에 9개교가 있고 "부천시 중학교 신입생 무시험배정 지침"에 따라 배정될 예정이며, 향후 중학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학교군은 평준화지역 단일학군(교육감 전형)으로 고등학교 배정시 학교와의 거리가 아닌 고등학교에 대한 학생의 선호도에 따라 선복수지원 후 추첨배정 방식으로 관리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중등교육지원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배치 시기 및 학교설립 여부는 공동주택 개발사업 진행상황, 분양률 및 입주시기, 학교신증설 교부금 예산확보 시기, 공사일정, 학생배치 여건, 학생배치계획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환경의 여건에 따라 학교배치(배정) 시기가 지연될 시 입주예정시기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별도의 통학편의(통학버스 운영 등)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함

성능부문	성능항목	성능등급
소음 관련 등급	경량충격을 차단성능	★★★★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구조 관련 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환경 관련 등급	기준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과대한 지하개발 지양	-
	토공사의 절토·성토량(땅깎기·흙쌓기를 위한) 최소화	-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신·재생에너지 이용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재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빗물관리	-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절수형 기기 사용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생물서식공간(비오톱) 조성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자연 환기성능 확보	-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생활 환경 등급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성능부문	성능항목	성능등급
화재, 소방 관련 등급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방법안전 콘텐츠	★
	주차공간 추가 확보	★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성능	★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피난설비	★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특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부천역곡 A-2B1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신청자 : 남양주건설 주식회사
3. 대지위치 : 경기도 부천시 부천역곡지구 A-2B1, 2블, 21필
4. 신청등급

가. 소관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방화복합체	★★★★
2. 방화복합체 차단벽	★★★★
3. 방화복합체 차단벽	★★★★
4. 방화복합체 차단벽	★★★★
5. 방화복합체 차단벽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기밀성	★★★★
3. 수직방향 열교차단	★★★★
4. 수직방향 열교차단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외장벽 녹지 조성	★★★★
21. 차양시설	★★★★
22. 방열판	★★★★
23. 정온제어(외장벽/도어)	★★★★
24. 방열판	★★★★
25. 차양 시설	★★★★
26. 차양 시설	★★★★
27. 차양 시설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열재	★★★★
2. 단열재	★★★★
3. 단열재	★★★★
4. 단열재	★★★★
5. 단열재	★★★★
6. 단열재	★★★★
7. 단열재	★★★★
8. 단열재	★★★★
9. 단열재	★★★★
10. 단열재	★★★★
11. 단열재	★★★★
12. 단열재	★★★★
13. 단열재	★★★★
14. 단열재	★★★★
15. 단열재	★★★★
16. 단열재	★★★★
17. 단열재	★★★★
18. 단열재	★★★★
19. 단열재	★★★★

2028년 5월 19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명 : 부천역곡 A-2B1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건축주 : 남양주건설 주식회사
건축면적 : 200.00㎡ (층별 면적 합계)
층 수 : 지하 1층, 지상 25층
연면적 : 1,885.576(㎡)
건축물 구분 : 아파트
설계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준인증) 제11조제3항에 따른 예비인증서 발급기준

인증등급 : 일반(2등급)

인증기간 : 2028.05.19 ~ 2030.05.19

인증요인 : G-에너지(2028-2029-2030), S-신재생에너지(2028-2029-2030), T-수자원(2028-2029-2030), W-물(2028-2029-2030), R-자원순환(2028-2029-2030), C-탄소(2028-2029-2030), O-환경친화적(2028-2029-2030), L-건강(2028-2029-2030), S-안전(2028-2029-2030), P-편의성(2028-2029-2030), Q-문화(2028-2029-2030), R-자원순환(2028-2029-2030), C-탄소(2028-2029-2030), O-환경친화적(2028-2029-2030), L-건강(2028-2029-2030), S-안전(2028-2029-2030), P-편의성(2028-2029-2030), Q-문화(2028-2029-2030)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일반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8년 5월 19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에너지인증 관련 규정(별지 제 2호 서식) 개정 2015.2.2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인증등급 : 일반(2등급)

인증기간 : 2028.05.19 ~ 2030.05.19

인증요인 : G-에너지(2028-2029-2030), S-신재생에너지(2028-2029-2030), T-수자원(2028-2029-2030), W-물(2028-2029-2030), R-자원순환(2028-2029-2030), C-탄소(2028-2029-2030), O-환경친화적(2028-2029-2030), L-건강(2028-2029-2030), S-안전(2028-2029-2030), P-편의성(2028-2029-2030), Q-문화(2028-2029-2030), R-자원순환(2028-2029-2030), C-탄소(2028-2029-2030), O-환경친화적(2028-2029-2030), L-건강(2028-2029-2030), S-안전(2028-2029-2030), P-편의성(2028-2029-2030), Q-문화(2028-2029-2030)

2028년 5월 19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6.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지붕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일괄스동스위치	적용
고효율LED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7. 마감자재 목록표

- 「주택법」 제54조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사이버)건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8.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203,926,359		
	기간이자	12,449,176		
	필요적 경비	-		
	그 밖의 비용	171,850		
	계	216,547,384		
건축비	공사비	토목	토공사	11,187,409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
			석축공사	-
			우·오수공사	4,974,251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도로포장공사	-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4,333,390
			부대시설공사	4,255,701
			계	24,750,751
			건축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2,260,918		
	지정 및 기초공사	1,488,615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 공사	59,467,491		
	용접공사	-		
	조적공사	2,773,443		
	미장공사	2,463,347		
	단열공사	1,580,809		
	방수·방습공사	3,588,333		
	목공사	6,863,254		
	가구공사	7,326,913		
	금속공사	2,549,878		
	지붕 및 환풍공사	27,168		
	창호공사	11,016,812		
	유리공사	3,137,538		
	타일공사	2,959,978		
	돌공사	3,392,111		
	도장공사	2,044,142		
	도배공사	574,840		
	수장공사	2,904,673		
주방용구공사	2,327,454			
잡공사	8,958,919			
계	133,523,228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6,526,180		
	급탕설비공사	5,710,408		
	오배수설비공사	5,878,715		
	위생기구설비공사	2,821,142		
	난방설비공사	1,201,461		
	가스설비공사	469,732		
	자동제어설비공사	78,198		
	특수설비공사	-		
	공조설비공사	-		
계	22,685,835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13,240,346		
	정보통신공사	5,674,434		
	소방설비공사	9,559,355		
	승강기공사	2,855,079		
	계	31,329,214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7,927,916		
	이윤	-		
	계	7,927,916		
간접비	설계비	4,538,040		
	감리비	3,146,858		
	일반분양시설 경비	6,979,721		
	분담금 및 부담금	-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2,240,147		
	계	16,904,317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39,169,648		

합계	492,838,293
----	-------------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감정평가금액(산출평균액)	가. 하나감정평가법인	나. 제일감정평가법인
216,739,142,180원	216,551,813,620원	216,926,470,740원

9. 분양주택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 목	금액	
택지비 가산비	방음시설 설치비	-	
	기간이자	13,231,363	
	기타비용	182,647	
	계	13,414,010	
건축비 가산비	법정초과복리시설설치비용	4,450,849	
	공동주택성능등급 가산비	-	
	바다충격음저감주택	-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홈네트워크	6,105,886
		에어컨냉매배관	1,392,929
		초고속통신특등급	-
		기계환기설비	1,832,741
	친환경주택건설비용	4,120,831	
	법령개정에 따른 추가건설 가산비	전기자동차충전시설	435,203
		기타비용	258,498
	지하주차장충고증가추가비용	547,704	
	설계비	363,045	
	감리비	7,702,443	
	기초지반공사비	말뚝박기공사비	3,233,531
		암석지반공사비	1,930,403
		흙막이및차수벽공사비	3,440,962
		지하공사특수공법	-
	안전관리비	709,640	
사업승인부가조건 가산비	5,106,029		
계	41,630,694		

10.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부천역곡지구 A-2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129-82-10595) 남광토건(120-81-01995) 중흥토건(416-81-13368) 케이알산업(126-81-05325) 극동건설(201-81-45083) 씨앤씨종합건설(123-81-56539)	남광토건(120-81-01995) 중흥토건(416-81-13368) 케이알산업(126-81-05325) 극동건설(201-81-45083) 씨앤씨종합건설(123-81-56539)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광진이엔지

11. 주택전시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역곡지구 하우스토리 주택전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안내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8 (역곡지구 하우스토리 주택전시관) ※ 주차공간이 협소하며, 주차요금이 발생하오니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 운영기간 : 주택전시관 관람기간 및 현장 제출서류 접수기간 및 현장 계약체결기간 ※ 사전청약 당첨자 관람(26.07.01~07.05)과 일반 관람(26.07.10~07.23)기간 구분 운영 * 사전청약 당첨자는 일반 관람 기간에도 방문 가능 ※ 운영기간 내 주말, 공휴일 방문 가능 ※ 운영기간 변동 시 홈페이지 개별 안내 예정 ■ 운영시간 : 10:00~17:00
사이버 견본주택	분양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소 : www.역곡지구하우스토리.com (사이버 주택전시관 추후 오픈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곡지구 하우스토리 주택전시관 : 032-860-0976 (10:00 ~ 17:00)